서울특별시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설치 · 운영 규칙

[시행 2012.5.31] [규칙 제3860호, 2012.5.31, 제정]
서울특별시 (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)02 - 3707 - 9934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함께 잘 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주요 공약 사항의 실천 등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서울특별시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(이하 “ 위원회 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 시장 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주요 공약 사항의 실천에 관한 사항
2. 시정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
3. 위원이 제안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되며, 위원은 시정 각 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위원 1/3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8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실무지원)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기타 지원에 관하여는 대외협력담당관이 이를 담당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, 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?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?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 <제3860호,2012.5.3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